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6. 6. 19.(금)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용탁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27호
- 제 출 일: 2026년 6월 8일
- 제 출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체계와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거리공연가의 자율적인 예술 활동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달성군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의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공연이 가능한 공공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달성군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제1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거리공연,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장소 등 핵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규 적용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 제3조(책무)는 군수와 거리공연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공연 참여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공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 제4조(지원사업)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연 콘텐츠 개발 및 문화행사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기준과 질서유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의 자유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음, 교통 혼잡, 안전 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공연자와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업무의 위탁)는 거리공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근거와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달성군의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연장소 운영 및 질서유지 규정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의 조화와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문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연장소 선정 시 소음, 교통,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자 선정 및 장소 이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29호
- 제 출 일: 2026년 6월 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달성군 출연·출자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과의 수의협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400	지상 1층 연면적 487.38㎡	5명	휴게음식점 및 주민상설판매장 제외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포함 관련 시설운영 지원 및 주민 교육·홍보사업
- 센터 체험프로그램 관련 분석·평가·연구·보고
- 신규 사업 발굴 지원 및 완료사업 사후관리
- 하빈 봉촌리 자원조사 관리,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 그 밖에 위탁자가 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직원	단시간근로자
인 원	5	1	4

○ 위탁기간: 2년(2026. 7. 1. ~ 2028. 6. 30.)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재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2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유사 시설 대비 위탁금의 편성이 과도한 점, 예산 대비 성과 미흡 등을 사유로 본위원회에서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달성문화재단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하빈PMZ평화예술센터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평화·생태 가치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로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설 운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설의 관리와 주민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유사 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해 검토한 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1)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전문기관으로서 지역 문화시설 운영 경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재단의 인력 및 행정지원 체계를 활용할 경우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할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2.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경우 연간 위탁금은 약 1억 7,700만 원이며, 기존 솜씨협동조합 위탁 시 소요되던 연간 3억 1,200만 원과 비교할 때 약 1억 3,500만 원의 예산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이 있습니다.

-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 정책과 시설 운영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사업의 통합적 추진 및 행정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달성문화재단은 공공기관 성격의 지역문화 전문기관으로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지역문화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운영이 가능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중심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따라서, 본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운영방식 대비 연간 약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의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경쟁성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정기적인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률, 프로그램 운영 실적, 주민 만족도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함께 확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30호
- 제 출 일: 2026년 6월 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며, 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및 유소년축구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별표1] 신설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반영(안 제3조)
- [별표2] 신설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추가(안 제11조)
- [별표5] 군 소속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확대(안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 삭제(안 제16조제2항)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및 유소년축구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 별표1에 신설 체육시설인 다사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을 규정하고,
 - 별표2에 해당 시설의 사용료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 별표5에 군 소속팀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군이 직접 육성·지원하는 공공체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행 제16조제2항은 공공시설 운영 수탁자·사용자 등에게 해당 공공시설을 운영 또는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²⁾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해당 면책규정을 삭제하여도 수탁자·사용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31호
- 제 출 일: 2026년 6월 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현행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비하고 자치법규에서의 군수 면책 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 삭제(안 제13조제2항)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민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상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³⁾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해당 면책규정을 삭제하여도 수탁자·사용자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위탁 동의(보고)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32호
- 제 출 일: 2026년 6월 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디자인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함.

3. 주요내용

- 위탁사업명: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 사업위치: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399번지 일원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마을 통합 디자인 및 브랜딩, 마을 골목길 벽화 리뉴얼, 돌담길 연계 테마 조성 조성, 대나무 숲길(산책로) 보완, 사업 관리 및 지원 등
- 위탁기간: 18개월(2026. 7. 1. ~ 2027.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마비정 벽화마을은 농촌의 전통문화와 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 이후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였으나, 현재는 벽화 테마라는 단순한 콘텐츠로 인한 다양성 부족과 접근성 한계로 관광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한 노후된 벽화의 정비에 그치지 않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주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리뉴얼 사업을 디자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사업은 현 실정, 사업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포함한 통합 브랜딩이 필수인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 조례 제4조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 민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사업은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 공간 디자인, 관광마케팅,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서 전문적인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방문객 유치 전략을 포함한 통합 브랜딩 구축은 전문기관이 보유한 창의성과 시장 대응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어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부합하며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적정성 또한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디자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조례 제4조의3 제2항제4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해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6호 및 제11조의 2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의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 조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바,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사업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관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겠으며, 수의계약에 따른 경쟁성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성과 평가와 함께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